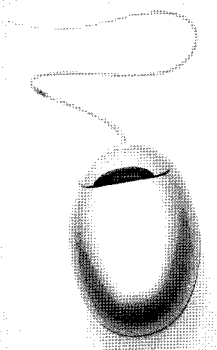




공공구매입찰참여를 위한 세부내용 www.kcca.or.kr



공공구매입찰참여를 위한
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절차 세부내용

공공구매입찰참여를 위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절차 세부내용

1. 직접생산확인신청

가. 공공구매 정보망 등록 기업(2005/2006년 “회사정보내역서” 제출기업)

- 회원가입 업체(로그인 후 “마이페이지” 좌측 “직접생산확인” 메뉴 활용)

① 마이페이지 “직접생산확인신청” 클릭

② 정보망에 등록된 자사제품 중 직접생산확인 신청 희망물품 선택

- 정보망에 등록된 업체정보 : 자동 표출

- 등록 자사제품 중 직접생산확인 신청물품 선택 : “구분” 체크 박스 클릭

③ 면담대상자 등을 입력

- 직접생산확인 공장(생산시설) 방문시 조사원이 면담할 관계자 관련 사항입력

④ 직접생산확인 신청

- 저장 클릭 시 자동 신청

나.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회원 미가입 업체

(2005년 회사정보내역서 제출 후 동 정보망 회원 미가입 업체)

- 회원가입 후 “마이페이지”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

① 회원가입

- 공공구매정보망(www.smpp.go.kr)에 화면 상단 : 회원가입 “클릭

→ “중소기업이용자” 클릭 → 이용약관 동의 → 사용할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입력 → 회원가입 신청 (신청 당일 회원승인 처리)

② 직접생산확인 신청

- 회원가입업체와 신청 동일

다. 공공구매정보망 미등록 기업

○ 공공구매 정보망 등록 후 직접생산 확인 신청

① 공공구매종합정보망(<http://smpp.go.kr>)에 접속하여 일반이용자로 회원 가입

②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 후 좌측 메뉴의 신규기업등록요청을 클릭하여 이동

③ 일반정보, 생산정보, 제품정보, 재무정보, 기술력, 기업특징 빠지없이 등록

④ 신규기업등록 방법은

⑤ 표준산업분류의 G2B 분류번호 중 우리조합은 24112501입니다.

⑥ 등록이 완료되면 기업특징 정보화면 상단의 인쇄를 클릭하여 회사정보내역서 양식을 띄웁니다

- ⑦ 확인 후 최종승인요청 버튼을 클릭 하여 전산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합니다
- ⑧ 출력된 회사정보내역서와 등록 시 기입한 각종 증빙서류(공장등록증, 벤처기업확인서 등을 우편으로 업체가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 지회로 송부합니다.
- ⑨ 중앙회에서 최종승인 되면 직접생산확인 등록절차 수행
 - 기 등록된 물품중 공공구매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
 - 협동조합, 등록업체 담당자, 연락처 등을 입력
- ⑩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확인조사원이 파견되어 확인 작업 수행

2. 직접생산확인 방법

- 원칙적으로 생산을 위한 필수인력, 시설, 장비보유 및 주요 공정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
- 물품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부가가치 기여율 등을 기준에 추가하거나 일부 항목을 확인기준에서 제외
- 직접생산확인은 물품별 특성에 다양성으로 인해 업계 스스로 조정 및 자청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(또는 중앙회)과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 민원발생 등 주요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직접 확인
- 직접생산확인 시점은 입찰참여 전 단계, 생산 및 납품단계로 구분
- 직접생산확인업체에 대한 제제
 - 위반 업체 및 심사불응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(벌칙)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삭제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
※ 조사내용

- 항목별 실태조사표에 의한(실사 및 증빙서류)조사표 작성, 해당 증빙서류 수집, 사진촬영
- 방문시각, 목적, 담당자, 증빙서류 준비 내용 등은 조사원이 사전 통보

